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88,073,494	11,642,205
일반회계	383,960,004	11,518,800
특별회계	4,113,490	123,405
기타특별회계	4,113,490	123,405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867,343	56,020
주택사업특별회계	140,923	4,2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85,403	29,562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81,141	17,434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303,680	9,110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5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091,70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채무관리 계획은 별첨 "채무관리계획"과 같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